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대표발의: 권영숙 의원)

의안 번호	20-142
----------	--------

발의년월일 : 2020. 9. .

발의자 : 권영숙, 강명숙, 김기석
김진천, 이필레, 이홍민

1.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폭염 빈도 및 폭염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 나. 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안 제3조)
- 다.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4조~안 제5조)
- 라.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안 제6조~안 제7조)
- 마.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바. 폭염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사. 재난도우미 운영 (안 제10조)
- 아. 협력체계 구축 및 폭염 피해 예방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안 제12조)

3.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5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4.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입법예고: 2020. 10. 15.~2020. 10. 20. (의견없음)

6. 조례안 :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마포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5.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라.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관리

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구에서 제공하는 폭염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3. 폭염 저감 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 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점검
3.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냉방용품·식수·비상약 등 확보
4.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
3.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에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 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제3조 관련)

폭염저감 시설	정 의
쿨 루 프	햇빛과 태양열의 반사와 방사효과가 있는 밝은 색 도료를 지붕 또는 옥상에 시공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열을 저감시켜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여름철 냉방기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도시온도 저감 기법을 말한다.
쿨링포그 시 스템	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물 분자를 분사하여 주위의 온도를 3~5℃ 낮춰주는 신개념 냉방장치를 말한다.
차 열 성 도로포장	태양열이 포장체에 흡수되지 않도록 차단 및 반사 성능이 우수한 재료를 포장체 내에 포함하거나 포장체 상면에 코팅하여 포장면의 열흡수를 방지하여 온도를 낮추는 포장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	주요 도로변 및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텐트를 설치하거나 나무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기타시설	상기의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폭염저감조치 사업 및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등
(안 제7조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2020년 예산 집행 현황

지원 구분	사업내용	2020년 예산 집행현황
		98,270천원
폭염저감조치	그늘목	18,000천원
	그늘막	16,560천원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지원 냉방용품 지원	무더위쉼터	49,310천원
	야외 무더위쉼터	14,400천원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도로물청소	청소행정과 기존사업 (도시환경정비, 미세먼지 저감)
폭염취약계층 보호	재난도우미 (생활지원사, 방문건강간호사)	노인장애인과, 건강증진과 기존 사업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 그늘목 및 그늘막의 경우 보행약자 동선 방해 등으로 인해 향후 선별적 추진 예정

4. 작성자 : 도시환경국 도시안전과 김주향 (☎ 3153-9469)